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3. 9. 16(월)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제32차 및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회의공개여부 결정

○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13-34-130)

- 김정렬 기획총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 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 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9월) 후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10월) 할 예정

나. SK텔레콤(주), (주)케이티와 (주)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3-34-131~133)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SKT, KT와 LGU+가 알뜰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하면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해 KT 및 LGU+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토록하고, 이동전화 3사에게는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함

다. 지상파DMB 보조국 구축계획 변경에 관한 건 - 안동문화방송(주) 등 2개 지상파 DMB 사업자 - (2013-34-134)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동MBC 및 대구방송이 일월산 지상파 DMB 보조국 구축 계획 변경(출력 1~2kW → 250W)을 각각 요청하여('13.7.12) 미래부(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분석 결과('13.8.23) 등을 참조하여 보조국 구축 계획변경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을 1kW에서 250W로 변경하여 구축할 경우 방송면적률의 감소 정도(안동MBC 4.74% 감소, 대구방송 2.59% 감소)가 크지 않고 인접되어 있는 타 방송사와 전파혼신도 없으며
 - 광고시장 위축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국 구축계획을 변경(출력 1~2kW → 250W)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라.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2013-34-135)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공익채널 7인, 장애인복지채널 8인)하여,
 - 공익채널은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
 - 장애인복지채널은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㉗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9월~10월), 위원회 의결(10월)을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㉘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별도 통지하기로 함

6. 폐 회 (11:05)